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관련 협조 요청

1. 영광법 제368호(2014.10.29.) 및 영광법 제18호(2015.03.09.)의 관련입니다.
2.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법인 이사회는 제565회 이사회(2014.10.15.)에서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절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추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차기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 및 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제도 개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의 정비는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2017. 4. 17.(월)까지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구대학교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나. 대구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다. 대구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끝.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이 사 장



수신자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대구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담 당 김성희

사무국장 박상룡

이 사 장 한부환

협조자

시 행 영광법 제28호(2017.03.28.) 접 수 (. .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 /

전화 053-650-8402 전송 053-650-8409 / taijibab@naver.com / 공개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수신자 학교법인영광학원 이사장
(경유)

제목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제도 개선 관련 경과내용 회신

1. 관련: 영광법 제28호(2017.3.28.)

2.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집행부회의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 또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총장 선출제도는 우리 조합원의 삶의 터전인 대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노동조합은 직시하고 있으며, 이에 임시총회 등을 통한 조합원 전체 의견 조율 및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본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기획부장 조영국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4/14 이준희

협조자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25 (2017.04.14)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681 전송 /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수신자 학교법인영광학원이사장
(경유)

제목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추천

1. 관련: 영광법 제28호(2017.3.28.) 및 노동조합-25(2017.04.14)

2.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집행부회의(2017.5.23) 및 대의원회(2017.5.26)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제도 개선 위원회 노동조합 추천 위원: 이준희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끝.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관인생략

기획부장 조영국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5/30 이준희

협조자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37 (2017.05.30)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681 전송 /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위원 선임) 통지

제585회 이사회(2017.05.26.) 결의에 따라,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위원 선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직 위	성명	직급(위)	선임일자	비고(추천 주체)
위원장	권대우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	2017.06.01.	법인 이사회
위 원	김조용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	2017.06.01.	
	김성애	대구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017.06.01.	대구대학교 교수회
	정유정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회장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2017.06.01.	
	이준희	대구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2017.06.01.	대구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조연호	총동창회 사무처장	2017.06.01.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장충석	그린 경영 컨설팅 대표 (창조적 융합경제연구원 수석 부원장역임)	2017.06.01.	기타 관계자 (외부인사)
간 사	박상룡	영광학원 법인 사무국장	2017.06.01.	
서 기	김성희	영광학원 법인 사무국 총무담당	2017.06.01.	

끝.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이 사 장



수신자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대구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장충석

담 당 김성희

사무국장 박상룡

이 사 장 한부환

협조자

시 행 영광법 제 108호 (2017.05.31.) 접 수 (. . .)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 /

전화 053-650-8402 전송 053-650-8409 / taijibab@naver.com / 공개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수신자 대구대학교 총장

(경유)

제목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결정 사항 통보 및 대학측 의견(방안) 제출 요구

1.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교 법인)의 통합 요청에 따른 법인 통합 추진방안과 대구대학교 총장선출제도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는 2회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위원들의 기본적인 입장표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통합추진 방안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17. 8. 8.(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차 회의가 대학 측 위원들 전원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3. 2017. 8. 11.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관하여 대구대학교 총장에게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대학측 의견을 2017. 9. 30.까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후 총장 선출에 관한 근거 조항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및 「대구대학교 학칙」에 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통합추진 방안에 관하여는 대구대학교 교학부 총장 및 경영부총장을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대구대학교 총장에게 통합추진에 관한 구체적 안을 2017. 9. 30.까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4. 2017. 9. 30.까지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대학측 의견 및 통합추진에 대한 대학 측의 구체적 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이 사 장



담 당 김성희

사무국장 박상룡

이 사 장 한부환

협조자

시 행 영광법 제 238호 (2017.08.21.) 접 수 (. . .)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 /

전화 053-650-8402 전송 053-650-8409 / taijibab@naver.com / 공개



노동조합

"ACE+ACE+, ACE+LINC+"

수신자 총장(총무팀장)
(경유)

제목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련: 총무팀-1877(2017.09.21.), 영광법 제238호(2017.8.21.)

2. 영광학원 이사회가 제출 요구한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노동조합은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총장 선출에 관한 근거 조항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및 「대구대학교 학칙」에 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나. 총장 선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합리적인 절차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다. 대학행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직원의 총장 선거 참여 비율은 반드시 1인 1표가 되어야 합니다.

라. 총장 후보 선출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붙임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노동조합위원장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9/25
이준희

협조자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99 (2017.09.25)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514 전송 053-850-5509 / joyoo@daegu.ac.kr / 비공개(6)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수신자 대구대학교 총장
(경유)

제목 총장 후보자 추천

1. 대구대학교 현 총장의 임기가 2018년 7월 21일에 만료되는 바, 임기 만료 2개월 전인 2018년 5월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장 후보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여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장 후보의 선출 절차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총장 선거로 인하여 학내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거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이 사 장



과 장 김성희

사무국장 박상룡

이 사 장 한부환

협조자

시 행 영광법 제 412호 (2017.11.24.) 접 수 (. .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 /

전화 053-650-8402 전송 053-650-8409 / taijibab@naver.com / 공개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한국노총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ACE of ACE+, ACE of LINC+"

수신자 한국노총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경유)

제목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선출관련 법률자문 요청

1.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시는 연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2018학년도 5월 중 이루어지는 차기총장후보선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맹에 법률자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 법률자문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은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률자문요청사항

- 1)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시,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시,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노동조합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나. 관련조항

1) 대구대학교 단체협약서 전문(2017. 10. 11. 개정) 제28조

- 제28조(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

2) 대구대학교_총장후보_선출규정(2012. 12. 20. 개정) 제9조

- 제9조 (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 각 1인과 직원대표가 추천한 직원 약간 명을 교수회 의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직원의 참여인원수는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4)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27조

-제27조(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득표 산정) ①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일 전에 결정한다.

②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방법은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다. 회신안내

1) 일시: 2018. 03. 16.(금)까지

2) 수신자: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이준희 (ljh@daegu.ac.kr)

- 붙임 1. 대구대학교 단체협약서 전문 1부
2. 대구대학교_총장후보_선출규정 1부
3.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1부
4.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1부
5.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끝.

한국노총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3/07
이준희

협조자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2 (2018.03.07)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514 전송 053-850-5509 / joyoo@daegu.ac.kr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ACE of ACE+, ACE of LINC+"

수신자 교수회장
(경유)

제목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요청

1. 관련: 영광법 제412호(2017.11.24.) "총장 후보자 추천", 대구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2차: 2017.06.20, 3차: 2017.11.20.)
2. 위호 관련 법인 이사회에서 2018. 5. 21일까지 총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토록하고, 총장 후보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여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총장 후보의 선출 절차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노동조합은 총장 후보 선출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협의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 1) 교섭위원 인원: 3 ~ 4명
 - 2) 1차 회의 일자: 2018. 3. 23.(금)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조정
- 나. 금년 5월에 치러질 차기총장 후보자 선거가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소통과 지혜를 발휘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 어려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끝.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3/09 이준희
협조자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3 (2018.03.09)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514 전송 053-850-5509 / joyoo@daegu.ac.kr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수신자 노동조합장
(경유)

제목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요청에
대한 답신

1. 관련: 노동조합 공문(2018년 3월 9일)
2. 교수회는 조만간 신임 영광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서 총장선출 제도에 관한 전임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복수후보 추천)의 철회를 포함하여 금번 총장선거 제도의 전체적인 윤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장 선출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의 개시일을 늦추어서 추후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노동조합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구대학교 교수회

교육지원조교	성위주	사무국장	서요성	부의장	이정복	부의장	이대식
교수회의장	03/21 소영진						
협조자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3/22 이준희
협조자							

시행 교수회-18 (2018.03.21) 접수 노동조합-13 (2018.03.22)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753 전송 /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중앙법률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우.07328)
TEL: 02-6277-0125, 0153, 0122, FAX: 02-6277-0156
94kimhyung@hanmail.net, cerca@nate.com, chihalim@naver.com

2018. 3. .

수 신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노동조합
참 조
제 목 “총장후보선출 관련” 등 검토

위 제목 기재의 질의에 관하여 검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김 형 동



담당변호사 장 진 영



담당변호사 지 하 림



본 의견서는 저희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에서 검토한 의견으로서 다른 법적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대구대학교(이하 “학교”라 합니다)는 2018. 5.경 차기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 직원이 참여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학교는 여러 취업규칙을 통해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단체협약서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본 협약은 대학이 정한 제 규정·규칙에 우선하며 본 협약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28조(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

※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6조(권한)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 6. (생략)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

2.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의 선출

3. 대학평의회(학칙 제94조) 교원평의원의 선출

4. 의안 관련 보직자의 출석 요구 및 현황청취,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5. 제2호 내지 제3호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③ 총장, 부총장, 처·실장 등은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교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27조(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득표 산정) ①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일 전에 결정한다.

②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방법은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이에 귀 노조는 아래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 가.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귀 노조의 대응 방안

2. 검토

- 가.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 교수회는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2) 근거¹⁾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학교는 취업규칙을 통해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교가 직원들을 배제한 채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고 하여,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위 1.에 인용된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은 총장후보의 선출을 전체교수회의 권한으로 두는 동시에, 그에 대한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은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고 하여,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직원의 선거 참여비율을 선거일 전에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 사이에 직원참여 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하여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완전 제한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회는 직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나.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귀 노조의 대응 방안

- 1) 답변 : 귀 노조는 학교를 상대로 직원참여 비율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학교 측 잘못으로 선거일 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귀 노조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학교를 상대로 직원참여 비율을 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학교 측의 잘못으로 총장후보 선출 선거일 전에 비율이 협의되지 않으면 단체협약 등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귀 노조에게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직원이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국 학교가 귀 노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90조2).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직원참여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노사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 과실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귀 노조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노동조합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 제9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위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
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끝.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ACE of ACE+, ACE of LINC+"

수신자 교수회장
(경유)

제목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재촉구

1. 관련

- 가. 노동조합-3(2018.03.09.)
- 나. 교수회-18(2018.03.21.)
- 다. 영광법 제412호(2017.11.24.)
- 라. 대구대학교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 회의(1차:2017.06.08, 2차:2017.06.20, 3차:2017.11.20)
- 마.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단체협약서 제28조(총장후보선출)
- 바.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선거권자)
- 사.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및 조직)
- 아.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27조(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득표 산정)

2. 노동조합에서는 2018년 3월 9일 공문으로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요청』를 하였으나, 교수회에서는 2018년 3월 21일 답신을 통해 법인이사장면담(2018.03.27) 후에 협의하는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2018년 3월 27일자로 제11대 홍덕률 총장은 면직 발령되었으며,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규정 제3조(총장선거의시기)의거하여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후임 총장선거실시하여야 함에도 아직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노동조합은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내에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촉구합니다. 끝.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4/03
이준희

협조자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17 (2018.04.03)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514 전송 053-850-5509 / joyoo@daegu.ac.kr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교수회

"ACE of ACE+, ACE of LINC+"

수신자 노동조합장
(경유)

제목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원 위촉 협조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대구대학교 현 총장의 궐위(2018.3.27)에 따라 교수회는 교수회 규정 제 6조 2항에 의거하여 신임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하여 본 교수회는 대구대학교 제 5조 1항에 따라 총장후보 선거업무를 진행할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합니다.
4. 귀 직원노동조합에서는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원 3명을 2018년 4월 9일 (월) 까지 교수회 사무국장 서요성 포털메일로 위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참고로 제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4월 11일 수요일 1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구대학교 교수회

교육지원조교	성위주	사무국장	서요성	부의장	이정복	부의장	이대식
교수회의장	04/03 소영진						
협조자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4/04 이준희
협조자							

시행 교수회-22 (2018.04.03) 접수 노동조합-19 (2018.04.04)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753 전송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교수회

"ACE of ACE+, ACE of LINC+"

수신자 노동조합장
(경유)

제목 총장후보 선거관련 협의

1. 관련: 노동조합 공문(2018.4.4.).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 9조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27조

2. 노동조합의 총장후보 선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본 교수회는 노동조합과의 총장후보 선거관련 협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시간: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나. 장소: 교수회 사무국 1101호

다. 참석인원: 교수회 3명, 노동조합 3명. 끝.

대구대학교 교수회

교육지원조교	성위주	사무국장	서요성	부의장	이정복	부의장	이대식
교수회의장	04/04 소영진						
협조자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4/05 이준희
협조자							

시행 교수회-25 (2018.04.04) 접수 노동조합-20 (2018.04.05)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753 전송 /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ACE+ACE+, ACE+LINC+"

수신자 교수회장
(경유)

제목 총장후보 선거 관련 회신

1. 총장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교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교수회-22(2018.04.03.)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원 위촉 협조", 교수회-25(2018.04.04.) "총장후보 선거관련 협의"
3. 총장후보 선출 절차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장 후보 선출 규정 제9조에 의거 직원의 참여비율에 대한 협의를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위촉은 직원의 참여비율에 대한 협의 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기획부장 유진오 사무국장 장성대 부위원장 곽성희 위원장 04/06
협조자 이준희

협조자

시행 노동조합-21 (2018.04.06) 접수 ()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514 전송 053-850-5509 / joyoo@daegu.ac.kr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